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431
----------	-------

발의연월일 : 2025. 7. 11.

발 의 자 : 이강일 · 강준현 · 김동아
김 윤 · 민병덕 · 박정현
염태영 · 이정문 · 이재관
임미애 · 정성호 · 조계원
최혁진 · 황운하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총 매출액을 기준으로 책정되며, 여기에 부가가치세 외에도 유류세·교육세 등 각종 간접세가 포함되어 실질 이익과 무관하게 과도한 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음. 특히 유류세 비중이 60%에 달하는 주유소 업종의 경우 영세 가맹점임에도 우대수수료 적용에서 배제되고, 실제 수익률보다 수수료 부담이 높아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규모의 판단 기준인 매출액에서 국세, 지방세, 부담금 등을 제외하도록 하여 실질 수익 기반의 공정한 수수료 체계를 마련하고, 정부 세입에 대한 수수료는 정부가 일부 부담하는 근거를 마련하며, 가맹점 단체와의 수수료 협의를 규정하는 등 영세 사업자 보호 및 소비자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8조의2

등).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1항 중 “매출규모 등”을 “매출규모, 특수 업종 등”으로 한다.

제18조의3제3항 중 “규모”를 “규모(매출액 산정시 국세·지방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금은 제외하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여 산정한다)”로 한다.

제18조의5 및 제18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5(특수 업종 가맹점 단체의 수수료 협의 요청) 제18조의2에 따른 특수 업종 가맹점 단체는 수수료율을 정하는 경우 신용카드업자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의6(일부 조세에 대한 수수료 지원) ① 신용카드가맹점이 판매대금 중 유류세 등 정부세입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부담한 가맹점수수료는 정부가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구체적 범위 및 보조 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의2(가맹점 단체 설립 등)	제18조의2(가맹점 단체 설립 등)
① 연간 <u>매출규모 등</u>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업자와 가맹점수수료 등 거래조건(이하 이 조에서 “거래조건”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계약을 체결·유지하기 위하여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① ----- <u>매출규모, 특수 업종 등</u> ----- ----- ----- ----- ----- -----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8조의3(가맹점수수료율의 차별금지 등) ①·② (생략)	제18조의3(가맹점수수료율의 차별금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u>규모</u> 이하의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이하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이라 한다)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③ ----- ----- ----- <u>규모(매출액 산정시 국세·지방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금은 제외하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여 산정한다)</u> ----- ----- -----

④ (생략) <u><신설></u> <u><신설></u>	----- ----- -----. ④ (현행과 같음) <u>제18조의5(특수 업종 가맹점 단체의 수수료 협의 요청) 제18조의2에 따른 특수 업종 가맹점 단체는 수수료를 정하는 경우 신용카드업자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u> <u>제18조의6(일부 조세에 대한 수수료 지원) ① 신용카드가맹점이 판매대금 중 유류세 등 정부세입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부담한 가맹점수수는 정부가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u> <u>② 제1항의 구체적 범위 및 보조 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	--